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5608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형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우

담당변호사 김동우

변론 종결 2021. 3. 12.

판결 선고 2021.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편취행위 등

1) 원고는 2012. 9. 25.부터 2013. 12. 27.까지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C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모집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또는 원금환매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에게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2. 9. 25.부터 2013. 12.27.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고합410, 574(병합), 2018고합4(병합), 187(병합)호]. 위 법원은 2018. 7. 6. C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8노312호)에서도 2018. 11. 15.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9차전1511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9. 2. 21. 'C은 원고에게 10억 1,000만 원 및 그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2019. 2. 26.(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1. 30.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2019. 2. 26.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4억 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2019. 2. 26.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9. 3. 13. 확정되었다.

나. C의 자금 이체행위

C은 2016. 4. 21.부터 2016. 8.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하였다.

[표]

순번	거래날짜	거래금액(원)	입금계좌번호(피고 명의 계좌)
1	2016. 4. 21.	10,000,000	교보증권 E
2	2016. 4. 21.	70,000,000	
3	2016. 4. 26.	50,000,000	
4	2016. 7. 28.	20,000,000	광주은행 F
5	2016. 8. 25.	100,000,000	교보증권 G
6	2016. 8. 25.	100,000,000	
7	2016. 8. 25.	90,000,000	
합 계		44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① 원고가 C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경 이미 C에게 주식투자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투자내역을 열람하여 피고 명의 교보증권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2017. 10. 13. 및 2018. 6. 21.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였으므로 그무렵 원고가 C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18. 11. 22.경 'C이 모집한 투자금 대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 및배당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판시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2015. 7.경, 2017. 10. 13. 및 2018. 6. 21.경 또는 늦어도 2018.11. 22.경에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6, 7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2020. 7. 8.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C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5. 7.경 C에게 주식투자계좌의 조회를 요구하여 최근 5년간 주식투자내역(옵션투자)을 열람했는데, 5년간 실제 투자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다'고 되어있을 뿐, 원고가 그 이후 이 사건 이체행위의 존재까지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나) 관련 형사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2017. 10. 13. 및 2018. 6. 21.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C명의 계좌거래내역을 포함한 위 재판기록 전체를 열람하였다거나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이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 12. 12. 및 2019. 12. 31. 검찰에 확정사건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광주지방법원 2020보1호로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2020. 4. 28. 준항고인용결정을 받아 그제서야 위 계좌거래내역을 등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체행위의 존재를 알았거나 더 나아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C이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하고, 이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C은 피고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그 수익금을 공범 및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이체행위가 이루어진 피고 명의 계좌는 C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일 뿐, C이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이체행위 결과 C의 계좌에서 C이 관리하는 피고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였을 뿐 이로써 C의 총재산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C에게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가정주부로 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총재산에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악의라고 볼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사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0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늦어도 원고가 C에게 투자금을 최종 지급한 2013. 12. 27.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2015두41937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이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C이 해당 예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계좌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 명의 교보증권 및 광주은행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선물옵션거래 및 투자수익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인다.

나) C은 위 제1의 나. 항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교보증권 계좌(E)로 2016. 4. 21. 8,000만 원, 2016. 4. 26.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위 각 돈은 그이체일 무렵 전액 피고 명의 교보증권 선물옵션계좌(G)로 다시 이체되었다. 또한, C은 위 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6. 8. 25. 피고 명의 교보증권 선물옵션계좌(G)로합계 2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C은 공범 H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선물옵션거래에 사용한 뒤 H와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반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 명의 교보증권 선물옵션계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선물옵션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위 선물옵션계좌에서 이 사건 이체행위 직후인 2016. 9. 22. ~ 2016. 12. 28. H에게 합계 2억 4,9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또한 위 선물옵션계좌에서 2016. 4. 25. ~ 2016. 4. 29. 피고 명의 다른 계좌로 2억원 이상의 돈이 이체되기도 하였으나, 같은 기간 피고 명의 다른 계좌에서 위 선물옵션계좌로 이체된 돈 역시 2억 원이 넘는 등 빈번한 계좌이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C은 위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6. 7. 28. 피고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2016. 1. 1. ~ 2017. 6. 30. C에게 송금되거나 C의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된 돈은 합계 227,361,740원에 이른다. 또한,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2016. 6. 24. ~ 2017. 3. 28. C의 투자자인 I에게 합계 58,500,000원, 2016. 8. 1. 공범 H에게 10,750,000원이 송금되는 등, C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의 돈이 C과 관계된 곳으로 송금되었다. 반면 피고와 I 및 H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배온실, 판사 구현정